

## 目 次

合 營 法 .....	1
(1984.9.8. 最高人民會議 決定 10 號)	
合營法 施行細則 .....	5
(1985.3.20. 政務院 決定 14 號)	
合營會社 所得稅法 .....	15
(1985.3.7.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 決定 12 號)	
合營會社 所得稅法 細則 .....	16
(1985.5.17. 政務院 決定 22 號)	
外國人 所得稅法 .....	19
(1985.3.7.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 決定 12 號)	
外國人 所得稅法 細則 .....	21
(1985.5.17. 政務院 決定 23 號)	

# 合 營 法

( 1984.9.8.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 決定 10 號 )

## 第 1 章 合營의 基本

第 1 條 世界の 여러 나라들과의 經濟技術 交流와 協助를 擴大 發展시키는 것은 朝鮮勞動黨과 共和國 政府의 一貫한 對外經濟政策이다.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은 共和國의 領域안에서 우리나라의 會社, 企業所와 다른 나라의 會社, 企業所, 個人사이에 平等과 互惠의 原則에서 合營하는 것을 獎勵한다.

第 2 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에서의 合營은 工業, 建設, 運輸, 科學技術, 觀光業을 비롯한 여러 分野에서 할 수 있다.

第 3 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은 다른 나라 合營當事者가 出資한 財産과 企業運營에서 얻은 所得을 法的으로 保護한다.

第 4 條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은 合營當事者들의 經營活動과 關聯하여 共和國 法이 規定한 모든 合法的 權利를 保障한다. 合營會社는 모든 活動에서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法規範과 規定을 尊重하며, 그것을 徹底히 지켜야 한다.

第 5 條 在日朝鮮商工人들을 비롯하여 海外에 居住하는 朝鮮同胞들도 이 法에 根據하여 우리나라의 會社, 企業所와 合營할 수 있다.

## 第 2 章 合營會社의 組織

第 6 條 合營會社는 當事者들이 會社組織에 關한 契約을 맺고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 對外經濟機關의 承認을 받은 다음 該當機關에 登錄하였을 때 組織된다.

第7條 合營會社의 出資하는 몫은 合營當事者들의 合意에 따라 定한다. 合營當事者들은 貨幣對象, 現物財産과 發明權, 技術文獻 等으로 出資할 수 있다. 現物財産, 發明權, 技術文獻 等으로 出資하는 경우에는 그 값을 國際市場 價格에 準하여 合營當事者들이 評價한다.

第8條 合營會社를 運營하는 過程에 生기는 會社의 빚에 대하여 合營當事者들은 出資 몫 안에서만 責任진다. 合營會社의 한편 當事者가 자기의 出資 몫을 第3者에게 넘겨주려고 할 때에는 상대편 當事者의 同意를 받아야 한다.

第9條 合營會社는 登錄된 資金을 줄일 수 없다.

### 第 3 章 理事會와 經營活動

第10條 合營會社는 理事會를 둔다. 理事會는 合營會社의 最高決議機關이다. 合營會社는 規約를 가지며 그에 따라 經營活動을 한다.

第11條 理事會는 合營會社 規約의 採擇 및 修正 補充, 合營會社의 發展 對策, 經營活動計劃, 決算과 分配, 管理成員의 任命 및 解任, 財政檢閱員의 任命 등 合營會社의 重要な 問題를 討議 決定한다.

第12條 會社 社長은 合營會社 組織에 관한 契約, 合營會社 規約 및 理事會의 決定에 따라 會社의 經營活動을 組織, 進行하며 自己事業에 對하여 理事會앞에 責任진다.

第13條 合營會社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銀行에 돈자리를 두며 合營當事者들의 合意에 따라 다른나라 銀行에도 돈자리를 둘 수 있다. 合營

活動에 必要한 資金을 다른나라 銀行에서 貸付받을 수 있다.

第 14 條 合營會社가 生産에 必要한 原料, 資料, 半製品들을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안에서 사할 때 그 價格은 國際市場價格을 基準으로 한다.

合營會社가 對外市場에서 物資를 輸入할 때는 關稅를 물리지 않는다.

第 15 條 合營會社는 自己의 生産製品을 對外市場에 輸出할 수 있다.

第 16 條 合營會社가 從業員을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것은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法과 合營 雙方的 契約에 따라 勞力을 管理하며 利用한다.

第 17 條 合營會社에서 일하는 다른나라 사람은 自己가 받은 勞賃에 대하여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外國人所得稅法에 따라 所得稅를 물어야 한다. 合營會社에서 일하는 다른나라 사람은 勞賃의 一部를 國外로 送金할 수 있다.

#### 第 4 章 決算과 分配

第 18 條 合營會社는 해마다 한번씩 定期的으로 經營活動을 決算하여야 한다. 決算은 總收入에서 原價를 補償하고 所得稅를 바친 다음 豫備基金, 生産擴大 및 技術發展基金을 비롯한 必要한 資金을 控除한 나머지 基金을 合營雙方的 出資몫에 따라 配分하는 方法으로 한다.

第 19 條 合營會社는 豫備基金을 造成하여야 한다. 豫備基金의 規模와 해마다 造成하는 比率은 따로 定한다. 豫備基金은 合營會社에서 缺損된 資金을 補充하는데 쓴다.

第 20 條 合營會社의 決算文件은 財政檢閱員의 檢閱과 理事會의 批准을 받아야 한다.

第 21 條 合營會社는 決算期마다 純所得에 대하여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合營會社所得法에 따라 所得稅를 물어야 한다. 合營會社는 生産을 始作한

때로부터 一定한 期間 所得稅를 免除받을 수 있다. 合營會社는 純所得이 적은 경우 所得稅의 減免을 請願할 수 있다. 合營會社는 土地를 使用할 때 土地使用料를 물어야 한다.

第22條 다른나라 合營當事者는 分配받은 돈을 國外로 送金할 수 있다.

### 第 5 章 合營會社의 解散과 紛爭解決

第23條 合營會社는 契約에 規定된 存續期間이 끝나면 解散된다. 合營會社를 繼續 運營하려면 存續期間이 끝나기 6個月前에 該當機關에 提起하여야 한다.

第24條 合營會社는 繼續하여 缺損을 내거나 合營會社의 한편 當事者가 自己의 義務를 違反하거나 不可避한 事情으로 會社를 運營할 수 없게되었을 때에는 理事會의 決定에 따라 存續期間이 끝나기 前에 解散할 수 있다.

第25條 合營會社를 解散할 때에는 現行業務를 結束하고 남은 財産을 出資欸에 따라 合營當事者들 사이에 分配한다.

第26條 合營會社를 運營하는 過程에 생기는 意見相異는 協議의 方法으로 解決한다. 協議의 方法으로 解決할 수 없는 紛爭問題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裁判機關 또는 仲裁機關에서 審議한다. 雙方의 合意에 따라 第3國의 仲裁機關에 紛爭問題의 審議를 提起할 수도 있다.

#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合營法施行細則

(1985.3.20. 政務院 決定 14 號)

## 第 1 章 一 般 規 定

第 1 條 이 세칙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合營法」을 정확히 집행함으로써 世界 여러나라들과의 經濟技術 교류와 협조를 확대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第 2 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공화국 영역안에서 우리나라의 회사, 企業所와 다른나라의 會社, 기업소, 개인 사이에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합영하는 것을 장려한다.

第 3 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합영은 電子 및 자동차공업, 金屬工業, 채취공업, 기계제작공업, 화학공업, 식료가공업, 피복가공업, 일용품공업, 건설, 운수, 관광을 비롯하여 人民經濟 여러 분야에서 할 수 있다.

第 4 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안에 조직되는 합영회사는 最新科學技術을 받아들이며 제품의 질을 높이고 輸出을 늘일 수 있어야 한다.

第 5 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안에 조직되는 합영회사는 有限責任會社이다.

第 6 條 국가는 다른 나라 합영당사자가 出資한 재산과 기업운영에서 얻은 소득을 法的으로 보호한다.

第 7 條 합영회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과 합영당사자들 사이에 맺은 契約, 합영회사 규약에 따라 독자적으로 經營活動을 한다.

第 8 條 합영회사는 모든 활동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규범과 규정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第9條 在日朝鮮商工人들을 비롯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들도 이 세칙에 따라 우리 나라의 회사, 기업소와 합營할 수 있다.

## 第 2 章 合營會社의 組織

第10條 다른 나라의 회사, 기업소, 개인과 합營회사를 조직하려는 우리 나라의 회사, 기업소는 對外經濟事業部와 합의한 다음 대외교섭을 하여야 한다.

第11條 합營당사자들은 합營회사 조직에 관한 계약을 맺은 다음 대외경제사업부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12條 합營회사 조직에 관한 契約書에는 계약당사자들, 회사의 이름, 회사의 존속기간, 회사의 자금총액과 당사자들의 出資몫, 리사회조직, 회사의 종업원수와 勞賃기준, 생활보장조건 등 합營회사의 조직과 운영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第13條 합營회사는 해당 道人民委員會에 會社登錄을 하여야 한다.

회사를 등록하려고 할 때에는 會社登錄申請書와 함께 합營계약을 승인한 문건, 합營회사의 규약, 출자를 증명하는 확인문건을 내야 한다.

합營회사는 회사등록기관에 등록된 때로부터 法人으로 된다.

第14條 합營회사가 등록된 내용을 고치려고 할 때에는 대외경제사업부와 합의하고 會社登錄機關에 고쳐진 내용을 알려야 한다.

第15條 합營회사는 會社規約를 가져야 한다.

회사규약에는 회사의 이름과 소재지, 회사의 사업내용, 회사의 資金總額과 당사자들의 출자몫, 회사의 존속기간 등 회사의 활동원칙과 秩序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第 3 章 出 資

- 第 16 條 合營 회사의 자금총액과 당사자들이 出資하는 몫은 合營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정한다.
- 第 17 條 合營 당사자들은 貨幣, 건물, 원료, 기계설비, 발명권, 기술문헌, 토지 등으로 출자할 수 있다.
- 第 18 條 合營 당사자들이 出資하는 貨幣는 그들이 합의한 통화로 한다.
- 第 19 條 건물, 원료, 기계설비, 발명권, 技術文獻 등으로 출자할 때 그 값은 國際市場價格에 따라 合營 당사자들이 평가한다.
- 第 20 條 토지를 출자몫으로 넣지 않을 때에는 土地使用料를 물어야 한다. 토지사용료는 국가 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
- 第 21 條 合營會社는 등록자금을 줄일 수 없다.
- 第 22 條 合營 당사자들은 회사를 운영 하는 과정에 생기는 회사의 빚에 대하여 출자몫안에서만 책임진다.
- 第 23 條 合營 회사의 한편 당사자가 자기의 출자몫을 일부 또는 전부를 第三者에게 넘겨주려고 할 때에는 상대방 당사자의 同意를 받아야 한다.

### 第 4 章 理事會와 管理成員

- 第 24 條 合營 회사에 理事會를 둔다.  
리사회는 合營 회사의 최고결의기관이다.
- 第 25 條 리사회는 필요한 수의 리사로 구성한다.  
리사회에 理事長과 부리사장을 둔다.  
合營 당사자들이 派遣하는 리사수와 리사장, 부리사장은 계약에서 정한다.



第 26 條 理事會는 해마다 한번이상 리사장이 소집한다. 리사장의 위임에 의하여 부리사장이 소집할 수 있다.

리사회를 소집하려고 할 때에는 소집 날자와 장소, 討議案件을 리사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第 27 條 리사회는 회사규약의 채택 및 修正補充, 회사등록자금의 증가, 회사존속기간의 연장, 회사의 해산, 회사의 발전대책과 경영활동계획, 決算과 分配, 社長과 부사장의 임명 및 해임, 재정검열원의 임명을 비롯하여 회사운영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를 토의 결정한다.

第 28 條 리사회에서 討議되는 문제는 회의에 참가한 理事會全員の 찬성으로 결정된다.

第 29 條 합영회사에 회사 사장과 부사장을 비롯한 필요한 수의 管理成員을 둔다.

第 30 條 합영회사 社長은 회사조직에 관한 계약, 회사규약 및 리사회의 결정에 따라 회사의 經營活動을 조직진행하며 자기사업에 대하여 리사회 앞에 책임진다.

## 第 5 章 物資購入과 製品販賣

第 31 條 합영회사는 생산에 필요한 原料, 資材, 半製品, 설비(이 아래부터는 物資라고 한다.)를 우리 나라에서 사출 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합영회사가 요구하는 물자를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合營會社는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사출 수 없는 물자는 다른 나라에서 사출 수 있다.

第 32 條 합영회사는 발명권, 기술문헌, 技術秘訣 등 앞선 기술을 다른 나라에서 사올 수 있다.

第 33 條 합영회사는 생산한 제품을 다른 나라에 輸出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第 34 條 합영회사가 생산에 필요한 물자와 생산한 제품을 우리 나라에서 사고 파는것은 해당貿易機關을 통하여서만 할 수 있다.

이때 가격은 國際市場價格을 기준으로 한다.

合營會社は 일부 경영용물자를 상업망을 통하여 직접 사올 수 있다.

第 35 條 합영회사는 生産한 제품의 輸出 또는 생산에 필요한 물자의 輸入을 직접 할 수 있으며 우리 나라 貿易機關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다.

第 36 條 合營會社가 생산에 필요한 物資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때에는 輸出入許可를 받지 않는다.

第 37 條 합영회사가 生産에 필요한 물자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할 때에는 關稅를 물지 않는다.

第 38 條 합영회사는 정해진데 따라 會社에서 쓰는 물, 電氣, 난방, 電話 등의 使用料를 물어야 한다.

第 39 條 합영회사는 회사의 財産에 대하여 우리 나라 保險에 드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第 6 章 勞 力 管 理

第 40 條 합영회사에서 우리 나라의 로력을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것은 勞動行政機關을 통하여 한다.

第 41 條 합영회사 從業員들의 勞働시간, 휴식, 勞働保護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勞働법규에 따른다.

第 42 條 합영회사는 다른 나라 人을 從業員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第 43 條 합영회사는 從業員들의 技術技能水準을 높이고 必要한 技能工들을 確保해야 한다.

第 44 條 합영회사의 從業員들은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社會보험 및 社會보장에 依한 惠택을 받는다.

合營會社は 從業員들에게 支拂되는 勞働보수의 7%, 從業員들은 自기가 受ける 勞働보수의 1%의 社會保險料를 納め야 한다.

## 第 7 章 外 貨 管 理

第 45 條 합영회사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貿易銀行(이 아래부터는 무역은행이라고 한다). 또는 무역은행이 指定하는 銀行에 外貨돈자리와 朝鮮원돈자리를 둔다.

合營會社の 모든 外貨 收入과 支出은 銀行에 있는 外貨돈자리를 通하여 行할 수 있다.

第 46 條 合營會社は 銀行돈자리에 있는 外貨殘高에 對하여 貿易銀行이 定한 利率에 依하여 利息을 受ける다.

第 47 條 합영회사는 合營當事者들의 協定에 依하여 다른 國家 銀行에 돈자리를 設할 수 있다.

第 48 條 합영회사는 우리나라 안에서 貿易機關을 通하여 輸入하는 商品代價금과 그에 依하는 費用을 外貨로 支拂하며 輸入하는 商品代價금과 여러가지 費用을 朝鮮원으로 支拂한다.

第 49 條 합영회사는 經營活動에서 부족되는 외화를 우리나라銀行 또는 다른 나라 은행에서 貸付받을 수 있다.

第 50 條 합영회사의 經營計算은 조선원으로 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며 합영당사자들의 合意에 따라 外貨로도 할 수 있다.

合營會社의 외화 수입과 支出에 대한 조선원의 換算은 무역은행이 정한 화폐 환산비율에 따라 한다.

第 51 條 합영회사는 다른 나라 合營當事者의 利益配當金を 그의 요구에 따라 다른 나라에 송금해주어야 한다.

利益配當金を 다른 나라에 송금할 때에는 그 내용을 證認할 수 있는 근거문건을 은행에 내야한다.

第 52 條 합영회사에서 일하는 다른 나라 사람은 회사에서 받은 노임액의 60%까지 다른 나라에 송금할 수 있다.

## 第 8 章 決算과 分配

第 53 條 합영회사는 經營活動에 대하여 해마다 決算하여야 한다.

합영회사의 決算年度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第 54 條 合營會社의 決算은 年間 總收入에서 原價를 보상하고 純소득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第 55 條 財政檢閱員은 합영회사의 決算문건을 檢閱하여야 하며 그 정확성에 대하여 理事會앞에 책임져야 한다.

第 56 條 재정검열원은 合營會社의 經營活動 情형을 檢閱할 수 있다.

재정검열원은 회사의 장부, 契約書를 비롯하여 財政檢問에 필요한 문건을 열람할 수 있다.

第57條 합영회사는 決算期마다 순소득에 대하여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合營會社所得稅法」에 따라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第58條 합영회사는 豫備基金을 조성하여야 한다.

예비기금은 登錄資金의 25%가 될 때까지 해마다 순소득가운데서 5%씩 積立한다.

예비기금은 합영회사의 缺損資金을 補充하는데 쓴다.

理事會의 결정에 따라 예비기금을 會社의 등록자금으로 옮길 수 있다.

第59條 합영회사는 生産擴大 및 技術發展基金, 종업원들을 위한 상금기금, 문화후생기금 등을 가진다.

基金의 종류와 규모, 조성비율은 리사회에서 토의결정한다.

第60條 합영당사자들에 대한 利益分配는 純所得에서 소득세를 바치고 기금을 控除한 나머지 부분을 출자몫에 따라 나누는 방법으로 한다.

합영당사자들은 분배받은 돈을 再投資할 수 있다.

## 第 9 章 合營會社의 解散

第61條 합영회사는 계약에 규정된 존속기간이 끝나면 解散된다.

합영회사를 繼續 운영하려면 존속기간이 끝나기 6個月前에 리사회에서 결정하고 대외경제사업부의 승인을 받은 다음 합영회사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第62條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리사회가 결정에 따라 存續期間이 끝나기전에 합영회사를 해산할 수 있다.

1. 합영회사가 계속하여 5年以上 缺損을 냈을 때

2. 한편 합영당사자가 자기의 의무를 違反하여 경영활동에 엄중한 후과를 가져왔을 때

3. 不可避한 사정으로 합영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을 때

第 63 條 합영회사가 해산될 때 리사회는 清算人을 임명하여야 하며 社長은 자기 사업을 청산인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第 64 條 청산인은 청산사업을 시작하기전에 회사등록기관에 清算手續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第 65 條 청산인은 합영회사의 現行業務를 결속하고 남은 財産을 합영당사자들에게 出資몫에 따라 分配하여야 한다.

第 66 條 청산인은 자기 事業의 정확성에 대하여 리사회앞에 책임진다.

第 67 條 청산인은 清算手續이 끝나면 리사의 批准을 받은 다음 회사등록기에 청산수속이 끝났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 第 10 章 紛 爭 解 決

第 68 條 합영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 생기는 意見相異는 協議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紛爭問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裁判機關 또는 무역중재기관에서 심의해결한다.

第 69 條 仲裁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貿易仲裁事件審議절차에 따라 한다. 중재原告와 중재被告는 중재원명단에 없는 사람을 중재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第 70 條 재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民事訴訟節次에 따라 한다.

다른 나라의 合營當事者는 민사소송에서 우리나라의 合營당사자와 같은 權利를 보장받는다.

第 71 條 合營당사자들의 合意에 따라 분쟁문제의 심의를 第 3 國의 무역중재 기관에 제기할 수도 있다.

#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合營會社所得稅法

(1985.3.7.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 決定 12號)

第1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안에 있는 합영회사는 이 법에 따라 稅得稅를 물어야 한다.

第2條 합영회사소득세는 決算期마다 總收入에서 原價를 보상하고 남은 純所得에서 문다.

第3條 합영회사가 무는 所得稅率은 순소득의 25%로 한다.

第4條 합영회사는 기업운영을 시작한 때로부터 3年까지 所得稅를 免除받을 수 있다.

소득세 면제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순소득이 적을 때에는 합영회사의 請願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하거나 덜어줄 수 있다.

第5條 합영회사소득세의 계산은 朝鮮원으로 한다.

第6條 합영회사는 정해진 날자에 해당 財政機關에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합영회사소득세를 제때에 물지 않았을 때에는 물어야 할 날자가 지난날 부터 물어야 할 所得稅額에 대하여 매일 0.3%의 延滯料를 물어야 한다.

第7條 재정기관은 합영회사의 소득세납부정형을 檢閱할 수 있다.

합영회사는 검열에 필요한 자료를 재정기관에 보여주어야 한다.

第8條 재정기관은 합영회사가 이 법을 어기었을 때에는 그 정상에 따라 벌금을 물릴 수 있다.



#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合營會社所得稅法 細則

(1985.5.17. 政務院 決定 22號)

第1條 이 세칙은 우리 나라 인민경제부문의 기관, 企業所와 다른 나라의 기관, 企業所(個人포함)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우리 나라 領域안에 있는 합영회사들에 적용한다.

第2條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領域안에 있는 합영회사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合營會社所得稅法과 이 세칙에 따라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第3條 합영회사소득세는 決算期마다 總收入에서 원가를 보상하고 남은 純所得에서 문다.

1. 합영회사 소득세를 계산하는 期間은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 (1年)로 한다.

새로 조직되는 合營會社所得稅는 企業운영을 시작한 때로부터 年말까지 계산하며 해산되는 합영회사소득세는 1월 1일부터 해산된 날까지 계산한다.

2. 합영회사의 純所得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1) 工業部門 합영회사의 純所得은 제품판매수입에서 販賣原價를 빼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 2) 建設部門 합영회사의 純所得은 建設物을 넘겨 주고 받은 수입에서 건설원가를 빼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 3) 輸送部門 합영회사의 純所得은 輸送運賃收入에서 수송원가를 빼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 4) 商業 및 便宜奉仕部門 합영회사의 純所得은 商品판매 및 편의봉사

수입에서 상품판매 및 편의봉사에 지출된 費用을 빼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5) 이밖의 부문 합영회사의 순소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財政部가 따로 정하는데 따라 계산한다.

3. 모든 합영회사는 경영활동에 대한 연간 財政簿記決算書를 다음해 1월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내야 한다.

第4條 합영회사가 무는 所得稅率은 순소득의 25%로 한다.

第5條 합영회사가 무는 소득세에 대한 計算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합영회사의 소득세는 해당 결산기간의 純所得額에 稅率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 합영회사의 소득이 우리 나라안의 여러곳에 있는 支社들에서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것을 다 申告해 稅率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第6條 합영회사는 기업운동을 시작한 때로부터 3년까지 所得稅를 免除받을수 있다.

1. 합영회사가 소득세를 면제받으려고 할 때에는 재정부에 所得稅免除申請書를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 정부는 소득세면제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순소득이 적을 때에는 합영회사의 請願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하거나 덜어줄수 있다.

第7條 합영회사소득세의 계산은 朝鮮원으로 한다.

합영회사의 순소득이 外資로 이루어졌을 때의 소득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貿易銀行이 발표한 결산년도말(해산된날 포함) 현재 兌換率에 따라 조선원으로 환산한다.

第8條 합영회사는 정해진 날자에 해당 財政機關에 소득세로 물어야 한다.

합영회사소득세를 제때에 물지 않았을 때에는 물어야 할 날자가 지난날 부터 물어야 할 所得稅額에 대하여 매일 0.3 %의 延滯料를 물어야 한다.

1. 합영회사는 소득세를 결산년도 다음해 1月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물어야 한다.
2. 합영회사는 소득세를 물 때에 所得稅納付書를 만들어 거래은행에 내야 하며 은행은 그것을 검토확인한 다음 1通은 보관하고 합영회사와 해당 기관에 각각 1通씩 보내주어야 한다.
3. 財政機關은 합영회사가 문 소득세액을 檢討確認하고 덜바친 소득세는 받아들이고 더 바친 소득세는 도로 내주어야 한다.
4. 합영회사가 不可避한 사정으로 소득세를 정해진 날자에 물지 못하여 부과된 延滯料는 재정기관이 검토하여보고 그 전액 또는 일부를 免除하여줄 수 있다.

**第9條** 재정기관은 합영회사의 소득세납부 정형을 檢閱할수 있다.

1. 財政機關은 합영회사들과 그와 련관된 기관 기업소를 대상으로 합영회사所得稅납부정형을 檢閱할 수 있다.
2. 合營會社는 검열에 필요한 資料를 재정기관에 보여주어야 하며 재정기관의 검열에 응해야 한다.

**第10條** 합영회사는 해당 기관들이 소득세를 더 받았을 때에는 法機關에 제기할 수 있다.

**第11條** 재정기관은 합영회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合營會社所得稅法 과이 세칙을 어기었을 때에는 그 정상에 따라 해당 所得稅의 4倍까지 罰金을 물릴 수 있으며 정상이 엄중할 때에는 법기관에 제기할수 있다.

#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外國人所得稅法

(1985.3.7.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 決定 12 號)

第 1 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안에서 所得이 있는 外國인은 이 법에 따라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第 2 條 外國인들에게 소득세를 물리는 所得은 다음과 같다.

1. 勞動報酬에 의한 所得
2. 發明權, 技術文獻, 技術비결 등의 使用료에 의한 所得

第 3 條 勞動報酬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 물리는 稅率은 다음과 같다.

月 所 得 額	稅 率 (%)
500 원부터	免 除
501 원부터 2,000 원까지	5
2,001 원부터 4,000 원까지	10
4,001 원부터 6,000 원까지	15
6,001 원부터 8,000 원까지	20
8,001 원부터 10,000 원까지	25
10,001 원이상	30

第 4 條 發明權, 技術文獻, 技術비결 등의 使用료에 의한 所得에 대하여 물리는 세율은 20%로 한다.

第 5 條 다음의 所得에 대하여서는 外國人所得稅를 물리지 않는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政府의 배려에 의하여 받은 賞金, 보조금.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銀行에 預금한 돈에 대한 利子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다른 나라 政府사이에 맺은 協定  
에 依하여 所得세를 물리지 않기로 한 所得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財政部가 定하는 그 밖의 所得

第6條 外國인所得세의 계산은 朝鮮원으로 한다.

第7條 外國인所得세는 外國인에게 所得을 支拂할 때 해당기관, 기업소가  
그의 所得에서 控除하여 문다.

外國인에게 所得을 지불하는 기관, 기업소는 外國인所得세를 定해진 날  
자에 해당 財政機關에 물어야 한다.

第8條 外國인所得세를 제때에 물지 않았을 때에는 물어야 할 날자가 지  
난날부터 물어야 할 所得세액에 대하여 매일 0.3%의 延滯料를 물어  
야 한다.

第9條 財政機關은 外國人所得稅納付 징형에 대하여 검열할 수 있다.

外國인에게 所得을 지불하는 기관, 기업소는 검열에 필요한 資料를 財政  
機關에 보여줘야 한다.

第10條 재정기관은 外國인所得세법을 어진데 대하여 정상에 따라 罰金を  
물릴 수 있다.

#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外國人所得稅法 細則

( 1985.5.17. 政務院 決定 23號 )

第1條 이 세칙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領域안에서 소득이 있는 모든 外國人들에게 적용한다.

第2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領域안에서 所得이 있는 外國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外國人所得稅法과 이 세칙에 따라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第3條 外國人들에게 소득세를 물리는 所得은 다음과 같다.

1. 勞動報酬에 의한 所得

1) 생활비(勞賃), 봉급등에 의한 소득

2) 可給金, 상금, 장려금, 利益配當金 등에 의한 소득

3) 講義料, 번역료 등에 의한 소득

2. 발명권, 技術文獻, 기술비결, 특허권, 商標權, 재산 등의 사용료에 의한 소득

3. 商品販賣에 의한 소득

※ 外國인이 상품을 팔려고 할 때에는 해당 재정기관에 알려야 한다.

第4條 勞動報酬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 물리는 稅率은 다음과 같다.

月 所 得 額	稅率(%)
500 원이하	免 除
501 원부터 2,000 원까지	5
2,001 원부터 4,000 원까지	10
4,001 원부터 6,000 원까지	15
6,001 원부터 8,000 원까지	20
8,001 원부터 10,000 원까지	25
10,001 원이상	30

第5條 發明權, 기술문헌, 기술비결, 특허권, 상표권, 재산 등의 使用料에 의한 소득과 상품판매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 물리는 세율은 20%로 한다.

第6條 外國人들에게 물리는 소득세에 대한 計算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外國人들의 勞動報酬에 의한 소득세는 소득세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 外國人의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과 발명권, 기술문헌, 기술비결, 特許權, 상표권, 재산 등의 사용료에 의한 소득, 상품판매에 의한 소득이 함께 있을 때에는 각각 그에 해당하는 稅率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3. 한사람의 노동보수에 의한 月所得이 여러곳에서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것을 다 합한데다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第7條 外國人의 勞動報酬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 물리는 세율은 사람별로 적용하며 발명권, 기술문헌, 技術秘訣, 특허권, 상표권, 재산 등의 사용료에 의한 소득, 商品販賣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 물리는 세율은 件別로 적용한다.

第8條 다음의 소득에 대하여서는 外國人所得稅를 물리지 않는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政府의 배려에 의하여 받은 賞金, 보조금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銀行에 예금한 돈에 대한 利子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政府와 다른 나라 政府 사이에 맺은 協定에 의하여 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한 소득
4. 外國人 留學生, 실습생, 研究生들이 받는 生活費,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받는 旅費, 잡비, 문화비 등과 선물, 記念品 등에 의한 소득, 다른 나라에서 外國人들에게 보내오는 돈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財政部가 정하는 그밖의 소득

第9條 외국인소득세의 계산은 朝鮮원으로 한다. 외국인의 소득이 外貨로 이루어졌을 때의 소득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은행이 발표한 외국인소득세를 무는 날의 兌換比率에 따라 조선원으로 환산한다.

第10條 외국인소득세는 외국인에게 所得을 支拂할 때 해당 기관, 기업소가 그의 소득에서 控除하여 문다.

勞動報酬에 의한 소득에 따르는 외국인소득세는 달마다 계산하여 물어야 하며, 發明權, 기술문헌, 기술비결, 특허권, 상표권 재산 등의 使用料와 상품판매에 의한 소득세는 그 소득을 支拂할 때마다 計算하여 문다.

第11條 외국인에게 소득을 支拂하는 기관, 企業所는 외국인소득세를 정해진 날자에 해당 財政機關에 물어야 한다.

외국인소득세를 제때에 물지 않았을 때에는 물어야 할 날자가 지난날부터 물어야 할 소득세액에 대하여 매일 0.3%의 延滯料를 물어야 한다.

1. 외국인소득세는 소득이 支拂된 때로부터 5日안에 물어야 한다.
2. 기관, 企業所는 외국인소득세를 물 때에 外國人所得稅納付書를 작성하여 거래은행에 내야 하며 銀行은 그것을 검토확인한 다음 1通은 保管하고 납부자와 해당 기관, 기업소에 각각 1通씩 보내주어야 한다.
3. 財政機關은 외국인이 문 소득세액을 檢討確認하고 덜바친 소득세는 도로 내주어야 한다.

第12條 재정기관은 外國人所得稅納付정형에 대하여 검열할수 있다.

1. 財政機關은 외국인에게 소득을 지불하는 기관, 기업소와 그와 관련되어있는 기관, 기업소를 대상으로 외국인소득세납부정형을 檢閱할수 있다.
2. 해당 기관, 기업소는 검열에 필요한 資料를 재정기관에 보내주어야 하며 재정기관의 檢閱에 응해야 한다.



第13條 外國人들은 해당기관들이 소득세를 더 받았을 때에는 法機關에 제기할 수 있다.

第14條 재정기관은 외국인소득세법을 어긴데 대하여 정상에 따라 罰金を 물릴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소득세법과 이 細則을 어기고 외국인소득세를 물지 않았거나 해당 所得稅額보다 적게 물었을 때에는 延滯料와 함께 소득액의 100%까지 罰金を 물릴 수 있으며 정상이 엄중할 때에는 해당 法機關에 제기할 수 있다.